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2

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김문수·박정현·양부남

박수현 • 박홍근 • 강준현

김기표・복기왕・정준호

박희승 • 위성곤 • 이학영

민형배 · 김 현 의원

(14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여수·순천 10·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는 진상규명조사 개시일인 2022년 10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여수·순천 10·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,465건에 그치고 있으며, 접수 건수 중11.8%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·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수·순천 10·19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신고 접수

기한과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·분석 완료시기의 기한 연장이 반 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,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·분석 완료시기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고, 이와 더불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·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조속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(안 제5조제2항,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1년"을 "4년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"2년"을 "5년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6개월"을 "2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진상규명을 위한 신고) ①	제5조(진상규명을 위한 신고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	②
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	
터 <u>1년</u> 이내에 하여야 한다.	<u>4년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	제7조(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
집 및 분석) ① 위원회는 위원	집 및 분석) ①
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	
시 결정을 하고, 최초 진상규명	
조사 개시일부터 <u>2년</u> 이내에	<u>5년</u>
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	
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	
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9조(진상조사보고서 작성) ①	제9조(진상조사보고서 작성) ① -
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	
종료되는 날부터 <u>6개월</u> 이내에	<u>2년</u>
여수・순천 10・19사건 진상조	
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	
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	
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	
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・순	
천 10・19사건진상조사보고서	

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	
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